

##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

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과제명	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방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자	한국건설산업연구원 (심규범 박사)
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방식	위탁형 용역		
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자 선정방식	수의계약		
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기간	'07.4.3 ~ '07.8.31 ( 5 개월 )		
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기적 개선 방안 : 건설근로자퇴직공제도 내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제제도 가입 촉진 : 건설산업정보망(KISCON)과 지자체의 인·허가 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</li> <li>- 적용범위 합리화 :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, 확대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전환 검토, 동일 공사 범위 규정 신설</li> <li>- 누락 방지 및 내역 확인을 위한 효율적인 가입자 관리 : EDI 도입에 대한 홍보 강화, 식당 및 휴게실 등 게시 강화</li> <li>- 적정 공제부금 확보 방안 :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확보 및 사후정산제의 사례를 참조한 확보 방안 마련</li> <li>- 적정 공제금 지급 : 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, 적립퇴직공제금 범위 내 대출허용 검토, 휴면공제금 규모추정 및 활용</li> <li>- 재원 및 기금 운용 : 가칭 '건설근로자복지정책협의회'를 신설하고 여기에 기금운영 내역 보고</li> <li>- 제도 운영의 공공성 제고 : 이사회와 운영위 통합, '건설근로자복지정책협의회' 신설, 공익위원 및 근로자대표 참여 검토</li> <li>- 법률의 정합성 확보 : 적용범위 및 이사회 구성 등을 건고법에 규정함.</li> <li>- 유관 제도와와의 관계 : 근기법의 퇴직금을 퇴직공제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</li> </ul> </li> <li>○ 중장기적 개선 방향 : 종합적인 건설근로자 사회안전망 지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설근로자가 직면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의 발굴 및 산업 차원에서 해결</li> <li>- 주요 내용 : 산업차원의 안전요소 공급, 산업차원의 위생 및 편의시설 공급, 산업차원의 연차휴가 운영, 산업차원의 추가연금 운영, 산업차원의 훈련수당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	
<input type="checkbox"/> 평가결과	별지 첨부		
<input type="checkbox"/> 평가자	평가전문위원 :	이 광 래	(서명)
	과제담당관 :		(서명)
	담당공무원 :	최 영 범	(서명)

## 【평가 결과】

### ○ 연구목적과의 부합성

- 본 연구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방안은 물론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제시함으로써, 퇴직공제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적에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

### ○ 연구방법의 적절성

- 건설근로자 및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근로실태 등을 조사함으로써 수혜대상근로자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하였고,
- 주요 선진국의 건설근로자 복지정책을 출장 조사하여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
- 이를 활용하여 퇴직공제제도의 개선방안은 물론, 건설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증진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가 매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

### ○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

- 본 연구결과는 퇴직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, 주요 선진국의 복지제도를 조사하여,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복지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수립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임

- 특히, 건설산업 및 건설근로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제도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기업 차원이 아닌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또 다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

## ○ 종합 평가

-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,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고 있으며, 향후 퇴직공제제도 개선 및 건설근로자 복지증진정책 수립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복지증진방안 중 일부는 시행을 위하여는 관련 제도와의 조정이 필요하고, 재원의 조달 방안 및 투자효율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, 한편으로는 대상자 및 유관 기관들과 계속 협의 및 조정하고,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